

EU,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망

25개 회원국 인구의 절반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촌지역의 면적이 EU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볼 때, 농촌개발은 매우 중요한 정책 분야이다. 농업과 임업은 토지이용과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분야이며, 농촌지역 경제활동 다각화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EU 전반에 걸쳐 농촌개발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01년 6월에 열린 Göteborg 이사회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근 유럽의 농업정책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있으며, 선택적인 지원수단(targeted support measures)을 통해서 식품안전성·식품 품질·상품차별화·가축후생·환경의 질·자연보전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04년 공동농업정책(CAP)의 ‘첫 번째 기둥(first pillar)’¹⁾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거치면서, 2007~13년의 새로운 회계연도 동안 정책개혁의 주요 초점은 농촌개발에 맞추어질 것이다²⁾.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EU집행위원회는 기존의 농촌개발수단들을 평가하고 농촌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조명할 것이다. EU의 전략적인 목표와 CAP의 새로운 방향에 기초하여, EU집행위원회는 농촌개발 정책과 관련된 규제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시장지향적인 CAP 지원시스템과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포함한다.

2) 이러한 정책을 CAP의 ‘두 번째 기둥(second pillar)’이라고 한다.

1. EU 농촌개발수단 평가

EU의 농촌개발정책은 CAP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으며, 농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어 왔다.

1.1. 초기 발전 상황

초기 농촌개발정책은 농가와 하부부문(downstream sector)에 물적 자본(투자)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가공·마케팅에 대한 지원은 생산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식품사슬(food chain)을 통합함으로써 농업부문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조기에 퇴유도와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 자원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1970년대에 특별한 정책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조건불리지역(Less Favored Areas; LFA)을 언급한 것이 지역적인 요인을 다루기 시작한 첫 사례이다. 조건불리지역 정책의 목표는 농업·농촌 지역의 생존과 자연 자원·환경의 보존을 위협하는 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책은 조건불리지역 관련 정책수단을 특정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여타 정책 수단과 연계시키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으로 발전하였다.

1.2. 아젠다 2000(Agenda 2000)

1990년대 중반까지 EU는 농업부문 구조조정, 지역개발, 환경보전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아젠다 2000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들은 보다 광범위하고 일관된 정책 틀 속에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³⁾. 아젠다 2000은 22개의 정책 수단을 제시하

3) EU 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1999년 3월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이사회 회의 정상 회

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 수단 중에서 자국 농촌지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채택한 수단은 국가나 지역단위의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EU 출연금은 정책수단과 대상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젠다 2000을 통해서 이 수단들은 하나의 통합된 농촌개발 규제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⁴⁾ 아젠다 2000은 농촌개발정책을 CAP의 두 번째 기둥으로 정립하는 한편, 시장 정책(첫 번째 기둥)의 개혁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CAP은 두 ‘기둥’의 균형을 맞추는데 역점을 두게 되었다.

1.3. CAP 개혁(2003년 6월)

CAP의 두 기둥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는 최근 개혁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생산과 가격의 분리(decoupling), 상호준수(cross-compliance), 조정을 통한 균형 달성(modulation)⁵⁾ 등의 방식을 통해 2005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첫 번째 기둥은 농가에게 기본적인 소득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자유로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에 반해, 두 번째 기둥은 농업·농촌이 본연의 기능과 환경보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공재를 공급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한다. 2003년 6월의 협약 결과 농촌개발 정책은, ① 품질과 가축후생을 향상시키고,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EU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수단의 도입, ②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을 감축하는 대신 농촌개발에 대한 EU자금 지원 확충(modulation) 등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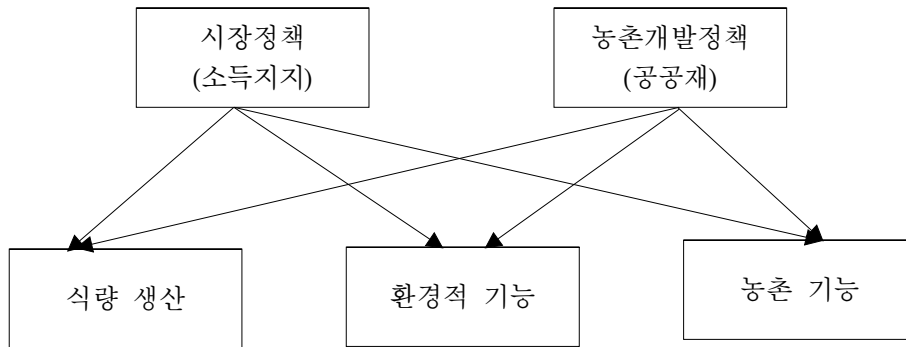
협약에서 조정 비율(modulation rate)을 5%로 정한 결과, 연간 12억 유로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농촌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사용 가능한 농촌개발 수단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예를 들어 젊은 농민층에 대한 지원 수단 강화).

답에서 채택되었고, 2000-2006년간의 회계 전망을 제시했다.

4) 1999년 5월 17일 제정된 'Council Regulation No 1257/1999' 이 그것이다.

5) 시장정책에서 농촌개발정책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2. 현행 정책수단 평가

2.1. 평가 개괄

아젠다 2000 결과로 회원국들과 대상 지역들은 농촌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중장기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2003년말까지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다. 평가의 목적은 농촌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상 지역의 변화하는 요구와 정책 우선순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중기 평가에 기초하여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장기영향평가(Extended Impact Analysis; EIA)를 포함해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 왔다. 장기영향평가는 향후 정책의 목표 설정, 선택 가능한 정책 수단 비교·결과 도출 등에 자료가 된다. 이 결과 2006년 이후 농촌개발 정책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 내용과 집행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장기영향평가의 결과는 새로운 농촌개발규정에 반영될 것이다.

2.2. 정책 우선순위

향후 농촌개발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부문들은 2003년 11월 잘즈부르크에서 열린 제2차 유럽농촌개발회담의 보고서 결론에 요약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농업과 임업

이 부문들은 농촌경관을 유지하고, 농촌 공동체가 자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왔다. 조건불리지역과 원격지역(remote regions)을 비롯한 유럽의 농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농촌지역 관리자로서 다원적 기능을 이행하고, 유럽 전역에서 시장 지향적인 생산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농업부문 구조조정,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도농지역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농촌개발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2.2.2. 광의의 농촌

농업에만 의지해서는 더 이상 농촌 지역을 발전시키기 어렵다. 농업부문 내부만이 아닌 외부에서의 다각화를 병행하는 것이야말로 자생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2.2.3. 식품 품질과 안전성

유럽 국민들은 식품 품질과 안전성, 가축의 후생, 농촌 환경의 보전과 개선에 점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2.2.4. 공공 서비스 이용 개선

많은 농촌 지역에서 공공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농업을 대체할 고용 수단 부족, 고령화로 인해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특히 여성과 젊은 인력들의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2.5. 유럽 전역에 대한 영향

농촌개발정책은 신규회원국 가입으로 확대된 유럽의 농촌 지역 전체에

적용되어, 농민들과 기타 농업 종사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농업 부문 구조 조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6. 통합 · 단결(cohesion)

농촌개발정책은 이미 경제 · 사회 통합에 큰 역할을 해 왔고, 유럽 확대에 발맞추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2.7.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유럽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농촌개발정책 수단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향후 정책은 LEADER 접근 방식을 통해 얻은 경험에 기초한 상향식의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개발 평가의 핵심 사항	
정책/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국가 단위 지원계획안 및 개별 프로그램 간의 조율을 통해 편익을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 도출 ○ 해당 지역 경제의 여러 부문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지역프로그램 조직·강화된 지역 조율 (local/regional coordination)과 관리 구조·상향식 접근 방식을 통한 농촌 지역의 자생력 확보 ○ 회원국이나 지역은 구체적인 필요성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해 비효율과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방지
집행메커니즘/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킹과 모범관행의 교환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 증진 ○ 자금 제공과 집행 메커니즘의 간소화 및 자금 지급 규정 통일 ○ 회원국들에게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개별 지원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투자: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효율성을 극대화 ○ 가공·마케팅: 위생·가축후생·피고용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확대 ○ 농업 환경 지원 수단: 토양과 수질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제고 및 식종 보호·생물학적 다양성·경관 보호 고려 ○ 기타: 젊은 영농인, 조기 은퇴 유도, 훈련, 마을 개보수, 농촌 전통유산의 보전 등
LEADER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ADER 프로그램은 상이한 상황에 있는 지역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

2.2.8. 파트너십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부문·민간조직·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책을 집행하고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2.9. 간소화(simplification)

농촌개발정책을 크게 간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정책집행은 해당 지역에 적합하게 조율한 단일한 프로그램과 재정 집행, 통제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

3.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농촌개발정책

CAP의 발전 과정과 농촌지역의 상황,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언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EU 농촌개발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는 다음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농업·임업 분야의 경쟁력: 향후 CAP 개혁과정에서의 구조조정 지원,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과 신규 회원국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감안해서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2) 환경·토지 관리: 토지 관리를 통해 환경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농업과 임업이 농촌 지역과 환경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다 광범위한 농촌개발(농촌 상황에 맞는 농림업 발전):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행위를 다각화함으로써, EU 내 다양한 농촌 지역의 장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농림업과 지역경제의 다른 부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3.1. 정책 목표

3.1.1. 경쟁력

더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업은 주요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EU의 지역 관리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이 농촌 경제에 기여하고 식량·공공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농촌 지역에서 농업의 잠재력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쟁력과 효율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신규 회원국은 더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가의 자생력, 환경 보호, 농촌개발의 사회적 측면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농업의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생산비용 감축, 규모확대, 지속적인 혁신과 시장지향성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물적 기반(농가 투자, 가공·마케팅, 농업 기간시설)에 대한 지원 수단과 인적 자원(조기 은퇴, 젊은 영농인 육성, 교육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한 지원 수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영농 활동의 다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 및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갖춘 부가가치 상품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 기술을 이용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3.1.2. 환경·토지 관리

이 목표 하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은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환경 지원 수단을 통해 환경을 유지하고 토지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주요 활동 주체(농민, 임업 종사자)들이 하여금 토지 관리를 지속하고 자연 공간과 경관을 개선할 수 있고, 이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자연 조건이 불리하거나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생기는 불리함을 보상해 준다면 농지를 포기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3.1.3. 보다 광범위한 농촌개발

보다 광범위한 농촌개발의 핵심 목표는 ‘살아있는 시골’을 만들고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농촌 경제와 농촌 공동체에 대한 투자는 농촌 지역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즉, 기본적인 서비스와 기간시설, 그리고 보다 좋은 환경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농촌 지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신규 고용 기회(특히 젊은 영농인과 여성)를 창출해야 하고 최신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가 활동을 비농업 부문까지 다각화, 농외활동에 대한 지원, 농업과 농촌 지역 내 다른 부문과의 관계 강화가 핵심 과제이다.

3.2. 집행·통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살려 농촌개발정책 집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EU·국가·지역 단위 기관들은 협력을 통해서 대상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 수단을 결정하고, EU가 제공하는 수단과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자금·프로그램 체계를 마련해서 상이한 자금 지원 체계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프로그램 목표의 혼란, EU 차원에서의 목표 설정 능력 감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2)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전략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정책 결과와 EU가 농촌개발에 사용한 자금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3) 정책 집행을 간소화하고,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책임 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4)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4. 새로운 농촌개발규정 : 전략적 접근

2004년 7월 14일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서는 EU 농촌개발정책이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정책을 강화하고 실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몇몇 핵심 목표(농림업의 경쟁력 향상, 환경·토지 관리, 삶의 질, 활동의 다각화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하면 EU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농촌발전기금을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우선 목표에 사용하는 한편, 각 회원국이 지역에 농업 구조조정과 토지 관리 및 사회·경제적 발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정책의 내용과 실행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 중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체계, 상이한 재정 관리·통제 시스템 중 상당수가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통합·투명성·가시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한 자금 체계와 프로그램 틀 하에서 농촌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첫 과제이다.

4.1. 새로운 농촌개발 기금

새로운 기금은 다년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하에서 집행될 것이고, 이 과정은 조직화된 구조와 과정(예를 들어 국가가 인정한 지급 기관의 통제 하에서)을 거치게 될 것이다. 농촌개발 기금과 프로그램 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현재에 비해 현저한 간소화를 이룰 수 있다. 농촌개발 정책수단을 간소화하면 집행 과정에서의 융통성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국의 기금 집행도 보다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될 것이다.

4.2. 전략 구성

향후 농촌개발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집행위원회의 문건인데, 이 문서

는 EU 농촌개발에 있어 우선순위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 제안서는 EU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촌개발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정책우선 순위를 달성하는 수단의 개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EU 전략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은 국가 단위의 전략과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게 될 것이다.

각 회원국의 전략과 프로그램은 세 가지 정책 주제(경쟁, 환경·토지 관리, 보다 광범위한 농촌 개발)와 관련된 정량화된 목표와 결과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각각의 정책 주제에 대해서는 기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데, 이는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이다(경쟁: 15%, 환경·토지 관리:25%, 보다 광범위한 농촌 개발: 15%). 하지만 이러한 최저한도를 지키더라도 각 회원국이나 지역은 충분히 재량(기금의 45%)을 발휘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EU 기금 중 최소 7%는 LEADER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적립될 것이다.

4.3. 프로그램 실행

회원국과 집행위원회가 동의한 EU 공통의 기본틀에 근거한 강화된 모니터링·평가·보고 시스템이 소개될 것이고, 이는 EU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줄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집행과 국가 전략의 이행에 관해 매년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매년 EU 농촌개발정책의 우선 사항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수정을 위한 제안을 할 것이다.

4.4. 정책 주제와 수단

세 정책 주제가 향후 농촌개발정책의 근간을 이룰 것이다. 또한 각각의 정책 주제를 다양한 수단으로 이행할 수 있다. 특정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합리화·간소화될 것이고, 특히 경쟁력 부문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각각의 정책 수단이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수준은 집행위원회 제안서에 나타나 있다(표 1).

표 1 2007-13년 EU 농촌개발정책 제안

정책 목표		EU 전략, 국가 전략, 농촌개발 프로그램
경쟁력	수단	인적자원: 직업훈련, 젊은 영농인 육성, 조기 은퇴, 자문서비스 물적 자본: 농가·임업 투자, 가공·마케팅, 농림업 기반시설, 농업생산 잠재력 회복 생산과정·생산품의 품질(2003 CAP 개혁): 품질기준 관리 위한 지원, 식품품질 인센티브 계획안, 식품품질 홍보
	기금 비율	최저 15%
	EU 공동출자 비율	최고 50/75%
	적용 지역	모든 농촌 지역
토지관리	수단	농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산간 조건불리지역, 기타 불리지역, Natura 2000 농촌지역, 가축후생(의무적), 임업 환경, 임업의 생산 잠재력 회복, 비생산적 투자 지원
	기준(baseline); 농업 부문	상호 교차
	기금 비율	최저 25%
	EU 공동출자 비율	최고 55/80%
광범위한 농촌 개발	수단	삶의 질, 기본 서비스와 기간시설 제공, 마을 개보수, 농촌 문화유산 보전, 직업 훈련 경제적 다각화; 비영농 활동의 다각화, 소규모 기업 지원, 투어리즘 장려
	실행	농촌개발전략 권장
	기금 비율	최저 15%
	EU 공동출자 비율	최고 50/75%
LEADER	적용 지역	모든 농촌 지역
	실행	위의 세 정책 목표에 포함된 지역 중 대상 지역에 LEADER 프로그램 실행
	자금 비율	최저 7%
	지급준비율	EU 농촌개발기금 전체의 3%(modulation 제외)
EU 공동출자 비율	최대 55/80%	
적용 지역	모든 농촌 지역 및 선택된 대상 지역	

4.5. LEADER

LEADER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EU 차원에서 강화될 것이다. 회원국이나 지역도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들은 LEADER 정책 목표를 포함함으로써, 세 가지 정책 목표에 기초한 지역활동단체(LAGs)의 지역개발정책 실행에 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농촌개발을 위한 EU의 재정지원

5.1. 새로운 재정수단을 위한 제안

CAP 재정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2007년 두 가지 기금을 설립하고 각각 첫 번째·두 번째 기동에 자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첫 번째 기동에 대해서는 유럽농업보증기금(EAFG)을, 두 번째 기동에 대해서는 유럽농업농촌개발기금(EAFRD)을 지급하게 된다. EAFRD 규정은 EAFG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EAFG이 매달 신고한 내용에 기초하여 CAP 중 관련 부분에 자금을 지급하는데 반해, EAFRD은 차별화된 세출 예산⁶⁾에 기초하여 지급하게 되고 초기·중기·최종 단계로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5.2. 새로운 가용 자금

EAFRD의 규모는 현행의 보증부문 기금 수준인 56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330억 유로는 기존의 지도부문에서 70억 유로는 조절(modulation) 시스템을 통해서 충당하게 된다. 이 결과 2007~13년에 EU의 총 농촌개발기금은 960억 유로에 이를 것이다(2004년 불변가격 기준).

6) 예산 의무를 따를 경우, N년도에 의결된 세출 예산은 N+2년말까지 유효하다.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N+2연도가 종료됨과 동시에 무효화된다.

5.3. 재정 통제

회원국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관련 관리·통제 시스템을 마련했음을 보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점들이 특히 중요하다.

- (1) 관리·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 분배
- (2) 관리기구와 통제기구 간의 역할을 정립할 것
- (3) 각 기구들이 맡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것
- (4) 효과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출 것
- (5) 효과적인 모니터링·보고 체계를 갖출 것
- (6) 시스템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새로운 방식 하에서 집행위원회는 두 기금에 대한 지급은 축소하거나 유예할 수 있고, 출납의 투명성을 검토하고 회원국들이 사용한 기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기관의 책임자는 당해연도의 보상지급액(reimbursement payment)을 포함한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5.4. 공동출자

EU의 공동출자 비율은 정책 목표 수준에서 결정되어, 최저 20%에서 최대 50%(수렴지역convergence regions⁷⁾의 경우 75%)에 이른다. 환경·토지관리와 LEADER의 경우는 상한이 55%(수렴지역의 경우는 80%)인데, 이는 EU의 정책우선 순위가 이 정책목표에 집중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U 전체 농촌개발기금 중 3%는 지급준비금으로 예치되어 2007~13년 사이에 LEADER 목표를 가장 잘 이행한 회원국에 지급될 것이다.

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7) 일인당 GDP가 EU 평균의 75%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의미한다.